

대법원 2016도21171

강운태 전 광주시장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18. 4. 10.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

☞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도21171 판결

1. 사안의 내용

▣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강운태는 전 광주시장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비전산약회 회장, 부회장, 고문 등임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 동구남구갑 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피고인 강운태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조직인 비전산약회를 설립하고, 2015. 6. 13.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 약 5,970명을 대상으로 야유회 행사를 진행하여 단체 명의로 사전 선거운동을 함
-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야유회 행사를 하면서 광주 남구 주민 5,970명에게 참가자들 회비를 초과해서 관광버스 운행비, 식사, 기념품 등 71,916,000원의 물품과 재산상 이익을 기부함

▣ 원심의 판단

- 피고인 강운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나머지 피고인들 : 벌금 300만 원~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강운태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해서 피고인 강운태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 사조직인 비전산악회를 설립하고,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야유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참가자들에게 회비를 초과하는 재산상 이익이나 물건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 강운태에 대하여 사조직 설립, 단체명의 선거운동, 사전 선거운동,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함
- 다만 기부행위의 대상자로 실제 확인되는 사람은 1,903명에 한정되고, 이들이 회비(1~2만 원)를 훨씬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것은 맞지만 기부금액을 특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넘어서는 인원과 금액에 대한 기부행위 부분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함

2. 대법원의 판단

가. 사건의 쟁점

- ▣ 비전산악회를 조직하고 행사를 진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통상적인 정치활동에서 벗어나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 ▣ 피고인 강운태 등이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 ▣ 기부행위의 대상자로 실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5,970명이 아닌 1,903명에 한정되고,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실제 71,916,000원이라고 보기 부족하다고 한 원심 판단이 타당한지

나. 판결 결과

- ▣ 쌍방 상고기각 (원심 확정)

다. 판단 근거

- ▣ 피고인 강운태 등이 설립한 비전산악회가 친목 도모와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피고인 강운태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에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비전산약회의 조직 경위와 인적 구성, 참석자의 동원방식, 피고인 강운태의 인지도, 행사의 구성, 행사규모를 급하게 확대한 과정, 회비를 초과하여 제공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통상적인 정치활동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치행위 또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피고인 강운태 등이 비전산약회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회비를 넘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는 데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선거구인 광주 남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된 1,903명 외에 공직선거법상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기부행위 금액 산정에서도 제공된 재산상 이익이 실제 71,916,000원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음

3. 판결의 의의

- 비전산약회를 조직하고 행사를 진행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인의 관점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강운태의 당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한 활동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임. 끝.